



귀하에게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설명하는 “GFE(Good Faith Estimate)” 를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.

준거법에 따라 의료 서비스 공급자는 **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사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**에게 의료 물품 및 의료 서비스 견적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

- 귀하에게는 응급 서비스 외 물품 또는 서비스의 예상 총액에 대한 GFE(Good Faith Estimate)를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. 이에 는 의료 검사, 처방약, 장비 및 병원 수수료와 같은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.
-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서면으로 GFE(Good Faith Estimate)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.
 - 의료 서비스 또는 물품을 최소 영업일 3 일 전에 예약한 경우: 예약일로부터 최대 영업일 1일
 - 의료 서비스 또는 물품을 최소 영업일 10 일 전에 예약한 경우: 예약일로부터 최대 영업일 3일
- 물품 또는 서비스를 예약하기 전에 의료 서비스 공급자 및 귀하가 선택한 기타 공급자에게 GFE(Good Faith Estimate)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요청을 전달받은 당사자는 요청 일로부터 최대 영업일 3일 이내에 GFE(Good Faith Estimate)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청구서에 명시된 비용이 GFE(Good Faith Estimate) 비용보다 \$400 이상 많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GFE(Good Faith Estimate) 사본 또는 사진을 저장하십시오.

GFE(Good Faith Estimate)와 관련된 귀하의 권리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www.cms.gov/nosurprises를 확인하거나 1-800-985-3059번으로 문의하십시오.